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TEL: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가. 현대전자 DRAMs에 대한 337조 조사착수
1990.4.23 ITC, 현대전자와 현대전자 아메리카사의 DRAM 수입품에 대한 337조 조사개시 발표.
제조사는 SGS-Thomson Microelectronics, Inc이며 DRAM 및 관련 부품과 특허권 침해제품이 본케이스에 포함됨.

피소자는 조사개시 20일내에 ITC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판정은 1년내에 발표되어야 하나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나. 미 항소 재판소, ITC 명령지지

미 항소 재판소(Court of Appeals), 한국의 제조업체가 관련 2차제품이 미국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것을 명령한 ITC 입장지지

- Intel사는 현대전자사의 EPROMs에 대해 337조 제소한 바 있음.

- ITC는 특허권을 침해한 EPROMs와 EPROM 관련 현대전자사의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 전자장비 등에 수입배제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2차적인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이의 무관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현대전자는 2차적인 수입제품이 수입배제 명령에서 적절하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증명을 반대하였음.

이번 Court of Appeal의 판정은 피해요건 증명을 요구하는 ITC 구제조치가 이 케이스의 특허권 소유자와 제조사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 적법한 것이며 ITC 구제기준에도 맞는다는 것임.

2. 미·일 구조 조정 회의(SII)

'90.4.6 미·일 양국은 작년 5월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구조 조정회의하의 관심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

미국측은 다음 6분야에 초점을 두어 일본에 시정을 요구.

- 1) 저축과 투자의 차이
- 2) 규제적인 지대사용 정책
- 3)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
- 4) 베타적 사업관행
- 5) Keiretsu(계열)사업 네트워크
- 6) 가격정책

이와같은 시정요구에 대해 일본측은 미국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

- 1) 투자 및 저축증대
- 2) 미국 업체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질 것을 촉구
- 3) R & D 지원
- 4) 수출촉진과 수출장벽 철폐
- 5) 근로자 교육훈련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미국 관리들은 일본이 처음으로 국내정책과 관행이 대외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음.

SII 중간 보고서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 칼라 힐즈 USTR 대표는 “좋은 첫출발”이라고 언급.

미국측 대표단은 “구조조정 약속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방안의 시행”을 촉구하였음.

최종 SII 보고서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일부 의견은 본 약속이 철저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구조 조정 회의가 1년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전국 제조업자 협회(NAM)를 포함한 또다른 의견은 SII에서의 본 약속의 시행과 언급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 구조 조정회의에서 301조 절차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한국 입장에서 볼 때 SII 절차상 일본 시장개방으로 한국 업체들은 과거처럼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본 구조조정회의가 성공되고 일본으로부터의 비판이 누그러지면 다른 미국의 교역국들에게 관심이 주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이 경우 주요대상국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인데,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도 공공투자 및 사회개발 부족, 소비보다도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거대 차별기업집단, 유통 및 소매상거래 진출규제, 세관절차 및 표준제도에 관한 불만, 정부 조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3. 상계관세 및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 통상부서의 내부입장

가. 하향성 덤핑과 상계관세(CVD) 조사 위한 잠정규정

미 상무부, 하향성 덤핑(Downstream dumping)과 관련한 1988 종합무역법의 시행을 위한 잠정규정(interim regulation)을 최종발표.

본 규정하에서, 상무부는 문제의 제품이 과거 5년내에 종가의 최소 15%에 해당되고, 1988.8.23기해 수입된 제품이 상계관세 또는 AD관세 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하향성 덤핑과 관련한 수입품을 감시할 수 있음.

본 규정에 의하면, 상무부는 하향성 제품이 AD / CVD 명령 발동범주 해당 여부 판정시 하기 사항을 고려해야 함.

-AD / CVD 명령 발효후 미국내 수입증가 여부
-본 명령에 해당되는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업체

간의 관계

- AD / CVD 명령에 저촉되는 제품이 해외에서 또는 그와같은 명령에 해당되는 1개국내에서 조립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
- 명령 대상제품과 하향성 제품에 대한 감시 대상 제품 사이의 가격차이가 근소한가의 여부

나. 지적 소유권(IPR)

337조하의 덤핑 및 지적소유권 위반에 관한 미국 법령은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기업에 제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GATT는 미국의 특허 및 저작권법을 위반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337조가 차별적인 것이라고 판정하였는데, 왜냐하면 수입제품이 미국내 특허 침해자에게 부여되는 동등한 법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임.

이에대해 현재 USTR의 하기 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임.

- 1) 의회는 외국 또는 국내의 모든 특허관련 소송을 청취할 새로운 특허 재판소를 신설할 수 있으며 여기서 현재 ITC·사법권하에 행사되는 수입배제 및 정지 명령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
- 2) 의회는 337조 제소건을 다루기 위해 CIT에 새로운 전문 부서를 신설할 수 있으며 국내 특허 위반사항은 계속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것임.
- 3) 의회는 피소자의 요청에 따라 337조 케이스를 CIT또는 지방법원에 위임할 수 있음.
- 4) 의회는 잠정 구제 조치에 관한 ITC의 청문회 이후 특허 관련 337조 조치를 법원으로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음.
- 5) 의회는 청구와 이에 대한 반응주장과 같은 ITC가 판정할 수 없는 특허관련 337조 현안 케이스에 대한 청문회를 법원으로 이전시킬 수 있음.

4. 한·미 통상 협안 정부간 협상

USTR은 최근 통상협상에서의 한국측의 반응에

만족 표시.

한·미 양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한국은 GATT 정부조달 협정 가입에 필요한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시사했음. 이것은 본 협정의 호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조달부문 개방을 의미하는 것임.

통신분야에서 한국은 관세인하 약속을 포함한 관세 양허(Concession)을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 차기 쌍무협상은 7월 예정임.

IPR 협안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사실 한국은 이번주 발표될 IPR Watch List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음.

최근 한국과 가진 Asia Society 회의에서 산드라 크리스토프 USTR 대표보는 금융 서비스가 차기 협안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과 그와 같은 정책으로 보조금 문제 가 대두될 가능성에 우려 표명.

5. 전자교역에 영향을 줄 입법안의 의회상정

한국 전자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상원 재무 소위원회 위원인 막스 바우커스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었는데, 일명 “통상협정 준수법 (Trade Agreements Compliance Act)”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법안은 일본의 반도체 협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 반도체 업계는 일본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일본내에서 미국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낮은 점이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 는 것임.

바우커스는 한국과의 투자에 관한 협상 타결을 인용하며 1989년에 수퍼 301조 지정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에 합의된 다양한 통상협정에 대한 한국의 준수상태에 의문을 표시. 확신컨데 그는 양국 협상의 타결로 철폐된 무역장벽 대신 한국이 식품위생과 소비자 보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음.

6. 쌍무 통상현안

가. 수퍼 301조

USTR이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쌍무협상과 SII에서의 진전으로 일본을 지정하지 말라는 상당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가이후 일본 수상의 최근 협력에 견주어 볼 때 일본지정은 비우호적인 조치이며 정치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미국의 목적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느낌에 기인함.

USTR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최우선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양국간의 최근 쇠고기, 통상협상의 타결과 현재 조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임.

나. 환율

재무부는 4월 “국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대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수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환율을 불공정하게 조작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 내렸음.

한국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외 무역흑자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한·미간의 무역 불규형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때 계속되는 원화의 평가절하에 우려를 표명.

‘90.3 도입한 “시장 평균환율(Market Average Rate)” 제도는 중요한 진전이나, 실질적인 중요성은 시행에 달려 있다고 언급.

1989년 이후 명목적인 원화의 평가절하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인플레의 영향을 경고하였음. 최근 수출증대 및 국내 수요 억제에 목표를 두고 한국 정부가 경제 현실에 관여하는 것에 우려 표명.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수출 주도 경제에서 국내 수요 주도 경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미국의 목적과는 상반되고 있기 때문임.

7. 다자간 통상협상(MTN) 진전상황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포함한 29개국 각료들은 멕시코 Puerto Vallarta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장래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음.

Arthur Dunkel GATT 사무국장은 7월까지 총15개 부문에서 기본 체계(frame work text)를 완수하고 남은 5개월 동안 최종협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새로운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언급. 아직도 지적소유권, 농업·섬유가 주요 현안 문제로 남아 있음.

확신컨데, 전자산업에 직접 관련 있는 MFN 협상은 덤핑 문제임.

미국측은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과 상습덤핑 위반자에 대한 규정강화를, 아세아 국가들은 덤핑 판정과 마진율 계산시의 현실성을 감안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8. 한국, 수퍼 301조 우선 협상 대상국에서 제외

칼라 힐즈 USTR 대표는 4월27일 협상이 끝나지 않은 인도를 제외하고 금년에는 수퍼 301조 우선 협상 대상국(PEC)을 지정치 않았음.

'89년에 PFC로 지정되었던 일본과 브라질은 이번에 빠졌고 한국 또한 주요 현안의 타결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대신에 힐즈 대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인 종료가 최고의 무역 자유화 우선순위라고 강조하였음.

즉 301조하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의 미래에 대하여 교역 대상국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충분한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부의 모든 재량을 삭제하는 보다 강력하고 규제적인 입법을 의회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대통령은 최소한 향후 8개월간 혹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될 때까지 현재의 통상정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쪽에서는 비판이 있을 것임.

보다 책임있는 의회 인사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될 때까지 현재의 통상 입법을 뒤엎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UR이 성공하지 못할 때 생겨날 것임. 이경우, 행정부는 301조를 보다 강력하고 규제적으로 만들려는 의회의 노력에 양보해야만 할 것임.

돌이켜 보면, 수퍼 301조 협상과 다른 부문에서의 미국의 관심사항을 수용하려는 한국의 노력과 성의는 가치가 있었음.

작년에 일본은 한국이 한 양보보다도 더 많은 양보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9. 스페셜 301조

한국은 스페셜 301조하의 감시 대상국으로 계속 잔류.

지적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스페셜 301조로 지정된 국가는 없음.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계속 잔류할 것이며, 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타이완, 터키, 베네즈엘라, 유고슬라비아는 감시 대상국에 속해 있고 멕시코와 포르투갈 2개국만이 감시 대상국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

정부조달

1990년은 정부 구매조항에 관한 국가를 지정하는 첫번째 해임.

1988통상법은 GATT 정부 구매조항을 위반하거나 미국 공급업체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차별 행위를 하는 국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힐즈는 본 코드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으며 통신과 중전기 부문을

포함하는 현재까지 제외된 부분까지 현재의 코드 적용을 확대시키려는 미국의 목표를 명백히 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음.

통신과 중전기 부문은 EC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이 본 코드에 가입하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정부조달에 관한 USTR의 성명은 한국이 지난 달에 중요한 통신장비의 정부조달시 가트 코드에 입각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음.

한국은 '90년 6월30일까지 최초의 구체적 리스트를 제출할 것임.

11. 6" CTV A / D 판정 제외

EC 집행위는 내달중 발표될 확정 A / D 판정에서 6"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6" CTV업체들은 EC내에 동종품(Like product)생산이 없으며 관세 부과시 한국 제품이 EC 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와 동시에 기타 제3국의 이익이 될 것임을 주장했었음.

12. GATT, "Screwdriver"규정에 대한 일본 측 제소지지

GATT패널은(Panel of experts)EC의 수쿠르드 라이버 규정에 대한 일본측 제소를 지지하는 예비 판정 결과를 도쿄와 브루셀에 각각 송부.

이들 초안은 4월 초순 GATT 이사회에 차기 미팅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

EC의 Screwdriver 규정은 규정은 EC 역내에서 조립되는 제품에 대해 A / D 관세를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대EC직접 수출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되며 부품의 60%(Value 基準)가 덤핑을 하고 있는 국가로 부터 수입될 때 적용됨.

동 규정은 현지 부품 사용률에 대한 직접적 요구 조항은 없음. (경우에 따라 EC Content率이 협상 되기도 함.)

EC는 동규정이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정당함을 주장했으며, GATT패널도 EC의 이러한 논리를 부인치 않았으나, 앞으로 EC는 동규정외에 다른 방법으로 관세 회피 방지책을 모색해야 될 것임.

GATT Panel에 대한 첫 제소에 승리한 일본은 향후 다른 무역분쟁도 비공식적 해결방식 보다는 정식 Gatt 절차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일본은 '92년까지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일방적 제제를 가하고 있는 EC의 요구조건을 거부키 위해 Gatt 규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13. EC, GATT에 개도국들의 특혜 제한 요청

우루파이 라운드 무역협정에 제출된 제안에서 EC는 개도국들이 일단 어느정도의 개발수준에 도달했다면, 무역규제를 해 온 GATT하의 그들의 특권을 포기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음.

이로써; 한국과 같이 그러한 권리가 철회되기 전 몇해간 무역흑자를 겪은 국가들이 누려온 이같은 특혜가 폐지될 수도 있을 것임.

반면, 이렇게 함으로써 EC는 현행 GATT 라운드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다소간 상실할 우려도 있으나 이에 대해 Mr.Andriessen(EC 대의 담당 집행위원)은 동유럽 사태와 단일시장 완성으로 이러한 우려는 없을 것임을 언급.

14. EC, 자국 신발산업 보호키로

EC 집행위는 한국과 일본산 신발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임시규정의 채택을 고려 중에 있음.

그동안 EC는 제3국 수입품과, 자국산 신발류 수출에 대한 제3국의 보호장벽에 대해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이는 어떠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임.

FTA가 취한 입장에 대해 The European Confederation of Footwear Manufacturers(ECFM)는 EC 집행위가 행한 시장분석의 질을 비판한 FTA를 제소했으며, 여기에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물량 감소는 이들 두나라의 생산라인이 중국, 태국 및 기타 아시아국들로 이전된 것이 원인이며, EC 산업의 사양화가 원인이 아님이 지적되었음.

15. EC 집행위, 자동차 시장 보호주의 강화

Mr. Andriessen은 EC의 무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1992년 이후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EC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명백히 한 후 이달 이후 일본 CAR 업체들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영국, 프랑스, 이태리 및 스페인 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다자간 쿼터제가 시장통합 이전에 해체될 것이기 때문에, EC는 일본과의 협정을 체결해야만 함.

외국 경쟁자들의 급작스런 진출로부터 자국 시장의 급속한 노출을 막기 위해 EC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EC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도록 협상할 의도이며, 이 계획은 EC시장의 완전 경쟁을 자연시킬 수 있을 것임.
집행위는 어떠한 경과기간이든 5년 정도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태리는 10년을 예상.

또한 EC 국가들 간 논쟁의 대상은 영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요타, 닛산, 혼다 등의 조립공장으로, EC는 이들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자동차는 일본과 협상될 예정인 수입쿼터에 포함시킬 것임을 확인했음. 이는 집행위 정책의 상당한 변화이며 그동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쿼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제안했었음.

Mr. Andriessen은 일본산 자동차가 쿼터에 포함될 경우 EC역내 지역에 대한 Sales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언급.

영국은 자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가 일본산으로 간주되는 이론에 반대할 것 같음.

집행위의 이번 태도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입장으로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

16. EC 소비자, A / D 관세 부담비용 £ 1. 2bn p. a

영국의 "National Consumer Council"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EC의 A / D 관세는 소비자 이익에 위배되며, CDP의 경우 약 £ 13, Video recorders는 £ 20, 전동타자기 £ 31, Photocopiers £ 181정도의 평균가격이 증가했음을 보고.

BREMA(a trade association representing UK electronics manufacturers)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내 업체들의 피해를 고려치 않는 편협한 조사라고 비판.

17. BREMA 연간 통계(영국시장)

영국의 CTV 시장은 1989년도 370만대로 15% 감소, large-screen TV의 경우 13% 감소한 180만대, 소형은 190만대임.

부진했던 3 / 4분기 이후 4 / 4분기에 들어서며 VCR은 815,000대로 회복, 영국산 VCR은 시장 점유율을 40%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17% 감소.

Satellite deliveries는 1989년 500,000대로 성장했으며 캠코더 시장은 300,000대로 배이상 증가.

18. 필립스 연간보고(1989)

필립스는 1989년도 순이익 증가가 1,37bn guilders로 증가되었음을 발표.
CDP나 소형 내수용 제품 등 가전제품은 1988년 827million길더에서 1.11bn길더로 까지 관리 이익

증가, 그러나 CPP를 포함하는 부품쪽에서는 IC부문의 손실과 함께 '88년 353million길더에서 125million길더의 관리손실을 초래했음.

필립스 회장은 1980년대 초반 일본과 한국 등의 치열한 경쟁으로 loss-making이었던 가전부문의 성공적인 성과를 자축.

필립스는 1980년대 동안 자체의 핵심 사업부문에 있어 상당한 A / D제조를 자행해 왔음.

19. "SHARP", 영국내 연구소 개설

일본의 샤프는 영국내 Oxford 지역에 곧 연구소를 개설할 것이며 전체 매출액의 7.5%이던 연구 예산을 10%까지 증가시킬 것임. Sharp Laboratories of Europe(SLE)Ltd에 의해 운영될 새로운 연구소는 일본 외부로서는 첫 기초 연구소가 될 것임. 동 연구소는 주로 유럽인으로 100여명의 Staff진을 고용할 것임.

동 연구소는 정보기술과 광전자, LCD, Mobil Communication 그리고 HDTV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임.

EC내에 연구소를 개설하기로 한 샤프의 이번 결정은 유럽에 대한 샤프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럽에서 유럽 시장을 위한 제품을 기획할 것임.

EC 집행위는 EC내에서 제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샤프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러한 EC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여짐.

20. Turkey의 새로운 CTV Tube 공장

Thomson의 자회사인 Video-Color와 Polly Peck International로 결성된 새로운 Joint Company인 Vescolor AS는 터키내 "Corlu" 지역에 CTV Tube 공장을 설립할 것임. (초기투자액=U\$ 60million)

이 공장은 51cm tubes를 2년내에 생산할 예정이

며 연간 생산능력은 8십만대임.(이중 수출은 30% 정도)

21. IBM, European Chip Venture에 참가

IBM이 유럽을 컴퓨터 칩 기술의 전진기지로 계획하는 £ 2.8bn project에 참여키로 한 결정은 IBM의 막대한 로비의 결과이며, 여태까지의 연구 Project는 BC기업에 국한되어 왔음.

22. GATT Panel, 일본 제소지지

GATT 분쟁 위원회는 "Screwdriver" 규정으로 EC의 A / D 관세부과에 대한 일본측 제소를 지지

1990년4월3일 Council meeting에 앞서 GATT 회원국에 배포된 보고서에 따르면 EC 역내에서 조립되는 일본산 전동타자기 및 기타 제품들에 관해 부과된 관세는 GATT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조립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최소 40%가 수출국 외부로 부터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키 위해 일본 업체들에 부과된 Undertaking 역시 GATT에 위배됨을 규정함.

비록 EC가 GATT의 Articles III와 XX(d)의 narrow한 혜택에 대해 GATT의 규정을 비판해 왔으나 EC로서는 본규정을 간과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본규정이 A / D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EC 본래 의도를 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EC는 GATT 가 받아들일만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임.

EC는 그들의 보호무역 규정들과 특히 반덤핑 관세들은 무역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

23. EC, 한국 대표부

'90년3월24일, Mr.Andriessen은 EC집행위의 한국관련 대표부에 선임. (대표단장은 Mr.Gilles

Anouil)한·EC관계에 대한 한국 무역협회(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연설에서 그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한국은 무역규제 관행을 종식하고 더욱 시장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임을 강조. EC는 한국의 대EC 수출 다각화를 원하며, 한국은 수출의 2/3가 의류, 전자, 사무기기 그리고 신발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 또한 그는 한국의 대외 투자의 8% 정도가 유럽에 행해 졌음을 언급.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는 주로 동남아시아 및 북미에 치중되었음.

24. 한국산 Polyester Yarn, A / D 제소

집행위는 Polyester yarns (man-made staple fibres) 수입품에 대해 A / D 조사를 개시. 이는 한국 및 태만, 인도네시아, 인디아, 중국 그리고 터키 등이 원산인 이를 Yarns의 일부가 덤핑되고 있으며 관련 EC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제소에 따르는 것임.

25. OEM업체, A / D 관세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유럽 사법재판소(ECJ)의 1990년 3월14일 판정에 의하면 OEM상표권자는 반덤핑 관세에 대해 이론 제기를 할 권리가 있음을 판정.

이는 미국 업체인 "Nashus"와 영국 업체인 "Gestetner"가 일본에서 납품받은 Photocopier에 부과한 A / D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

EC Council은 OEM 업체는 동권리가 없음을 주장했으나 ECJ는 이를 기각하며, OEM 업체들은 직접적, 개별적으로 확정 A / D관세를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s)에 의해 관여됨을 판정했음.

이전의 경우 이러한 권리는 단지 수출업자 및 관련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사 등 만이 직접 ECJ에 의해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음.

Nashua와 Gestetner에 의해 제기된 주요 요지
① 덤픽마진 산정에 있어 OEM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 ② OEM에 관해 별도 취급 하용않음.
- ③ OEM의 차별대우
- ④ A / D 관세의 오산
- ⑤ Undertaking의 부당한 거부

모든 실제적 문제에 관해서 "ECJ"는 EC 이사회 결정을 지지했으므로 OEM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 공급자에 부과된 것과 같은 A / D관세율을 지불해야만 함.

26. 미·EC 칩 메이커들간의 협력

미국의 반도체 산업 혼소시엄인 "SEMATECH"와 EC측 "JESSI"는 컴퓨터 칩 생산 부문의 일본 독점에 대항키로 두 가지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동의함.

이 프로젝트들은 일본 기업들의 강점을 분석하고 Common Semiconductor Standards 채택을 연구할 것임.

27. 일본, EC 진출 증가

일본 대외 무역협회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Jetro")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대EC 진출의 증가는 1990년 1월말 현재 최소 10%이상의 투자 증가와 함께 529개 기업이 EC 및 EFTA 18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별로는,

영국 : 132

프랑스 : 95

서독 : 89

스페인 : 55

네덜란드 : 39

이태리 : 28이며 이중 139개 업체가 전기 및 전자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 및 부품의 현지 조달률(Local content)은 평균 5 1.2%에서 67.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